#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5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김미애·박준태·송석준

조경태 • 서지영 • 김기현

김예지 · 임이자 · 강승규

박성민 • 박상웅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 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 법률 제 호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주요직위 명부록)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임기,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이하 이 조에서 "주요직위명부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받은후 24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주요직위 명부록 작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대통령선거 실시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주요직위 명부록을 제1항에 따른 대통령당선인 에 대한 보고 이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주요직위 명부록 작성 및 대통령당선인 보고, 제3 항에 따른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직위 명부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9조의5(주요직위 명부록)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
	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
	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
	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이
	하 이 조에서 "주요직위 명부
	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
	통령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받
	은 후 24시간 이내에 보고하여
	<u>야 한다.</u>
	② 주요직위 명부록 작성의 기
	준이 되는 시점은 대통령선거
	실시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주요직위
	명부록을 제1항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보고 이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직위 명
	부록 작성 및 대통령당선인 보
	고, 제3항에 따른 국회 보고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